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5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박민규 · 유동수 · 윤준병
김현정 · 최혁진 · 김한규
박은정 · 임미애 · 윤후덕
이주희 · 박상혁 · 김우영
이학영 · 김남준 · 정태호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구간 내 수급자에게 비교적 확실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투입 예산대비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와 달리 노인 진입 계층의 자산과 소득 증가로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은 물가 및 소득인상률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6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임.

하지만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목표에 집중하기보다 광범위한 노인층에 정액성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고,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의 차등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 직역연금 수급 여부, 저소득자 특례 등 여러 산정 규정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수급권자의 급여 예측 가능성이 낮고, 제도 운영상 복잡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생활수준과 제도상 수급 자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되는 이른바 '줬다 뺀 기초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기초연금이 가장 빈곤한 노인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2027년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기초연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최대액으로 하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하후상박식 급여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소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이 되도록 하고,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실질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배제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정기준액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지급 제외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
- 나.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개편하고,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원, 최대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함(안 제5조).
- 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 규정을 폐지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라.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26조의2 신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begin{array}{l}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quad \text{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text{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quad - \frac{\text{10만원}}{\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quad \text{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times \text{소득인정액} \end{array}$$

제5조의2·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연금액 조정”을 “기준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로,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를 “세부 절차 등에”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 금지)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

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u>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u>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u>	<u>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u> <u>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u> <u>2.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u>

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
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
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
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
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
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
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
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
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같음
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
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같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
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을 같음하여 선
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
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
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
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
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
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
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
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
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
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
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
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
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
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
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
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
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

제5조(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급
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
(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
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
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
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
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
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
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
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
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
으로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
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
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
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

한다.

$$\begin{array}{l} \text{1인 가구} \\ \text{기준 중위소득의} \\ \text{100분의 40에} \\ \text{해당하는 금액} \end{array} - \frac{\begin{array}{l}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 \text{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 10만원 \end{array}}{\begin{array}{l}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 \text{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nd{array}} \times \text{소득인정액}$$

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
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
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
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
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
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
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
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
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
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
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

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
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
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
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
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
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
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
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
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
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
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
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
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
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
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
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
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삭 제>

<삭 제>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

<삭 제>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현

략)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

령과 같음)

② -----제5조-----

-----.

<삭 제>

④ 제2항-----

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기준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세부 절차 등에-----
-----.

제26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소

득 등의 의제 금지) 기초연금
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